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0
------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9일, 이신혜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의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신혜 의원)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임.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서울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의 위법적 조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와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관계

- 서울시는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금융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조례를 2015년 7월에 제정하였음.
 - 조례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외소재 지점을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조성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문

과 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신규 진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한하여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를 두고 보조금 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기능을 위임하고 있음.
-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고 있음.

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자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 19명을 2016년 3월에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개정안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례 제11조 하단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가 독자적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희망경제위원회의 대행 규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임.
- 아울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서울시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관련 분야의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

- 전원이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폐쇄적이고 편중된 의사 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 1인을 금융산업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라.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제한

- 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음.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조례 제13조의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 서울시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바람직함.
- 또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이 포함되도록 한다면 금융정책위원회의 보조금 심의 관련 기능을 배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심의를 대행하는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생각됨.
 - 개정안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보조금 심의의 수정(안 제12조 제3호), 보조금 실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간주규정(제13조 제2항) 삭제는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임.

마.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 금융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서울시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의 범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함.

- 그 외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안 제 11조 제2항은 상시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
----------	------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신혜,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진철, 맹진영, 문상모,
유 용, 신건택, 이숙자,
이윤희, 이현찬, 조상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상충되어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의원 1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희망경제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함(안 제12조 제3호)

다.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

나. 관계부서 : 투자유치과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제3호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으로 한다.

제13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u>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u></p>	<p>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u>를 둘 수 있다.<삭제></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생략) <u>3.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u> 4.~5.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u>3.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u> 4.~5. (현행과 같음)</p>
<p>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② <u>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u> ③ <u>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u>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 ----- ----- <u>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u> ----- ----- ----- <삭제> ② <u>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신 혜